제52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0. 11. 13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0. 11. 13.(금) 10:30 ~ 12:00

○ 장　　소 : 정부서울청사 2층 국무위원식당(무궁화2실)

○ **출석위원**(8명)

- 민간위원 : 이정희(주재)·김윤정·문소영·정은미·이지혜 위원
- 정부위원 : 국조실, 기재부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안건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2020-618	금융위	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2020-620	금융위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2020-625	금융위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2020-629	금융위	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2020-630	금융위	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심의 결과

1. (심의)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권업별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, 2020-618, 2020.3620, 2020-625, 2020-629)

□ 개 요

소관 부처	금융위원회
근거 법령	신용협동조합법, 보험업법, 상호저축은행법, 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
규제 사무명	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기준
위원회 결정 내용	부대권고

□ 논의 내용

(1) 부처 의견청취

○ (OOO 위원) 상정된 안건은 '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지도를 일괄적으로 감독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. 권업별 감독 규정 등의 개정으로 일선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?

⇒ (금융위) 기존 운영 중인 행정지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임. 일선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등은 변동이 없음

○ 기존 운영 중인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으로 입법하는 이유는?

⇒ (금융위) 행정지도는 시급한 경우 활용하는 수단으로, 행정지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임.

○ (OOO 위원) 기존 운영 중인 행정지도의 성과는?

⇒ (금융위)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과는 공급 대책, 세재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임. 금융대책의 성과만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움. 다만, 15억 초과 주택에서의 가격 상승 추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음.

○ (OOO 위원)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서민,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닌지?

⇒ (금융위)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LTV·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음

○ (OOO 위원) 15억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근거가 있는지?

⇒ (금융위)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%에 육박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폭등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임

○ (OOO 위원)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도 쓰이고 있음. 이를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?

⇒ (금융위) 이번 규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한 것으로 이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

(2) 위원회 논의

○ (OOO 위원) 새로운 규제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기존 운영 중인 행정지도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○ (OOO 위원) 기존 운영중인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에 불과, 이를 부결시킬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음.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음.

○ (OOO 위원) 행정지도는 시급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로 입법화 필요

○ (OOO 위원) 부동산 안정, 금융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규제라고 보임

○ (OOO 위원) 규제 취지에 동의함.

□ 심의 결과 : 부대권고

○ 규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안동의

- 다만, 금융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, 규제대상을 15억 초과 주택으로 설정한 근거, 주택담보대출·가격동향 등 1년간 행정지도한 사항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등을 보완할 것